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(법률 제19769호, 2023. 10. 24. 공포)되어 도서·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, 국가·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(안 제1조의2)

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2) 입법예고(2024.2.7. ~ 3.18.)  
3) 행정규제 : 없음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
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 이란 시·군·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,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의2(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시·군·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,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에 속한 시·군·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
<p>제2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</p>	<p>제2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</p>

준 등)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(생략)

준 등)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4156